

# 울산광역시 남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40호 2009. 1. 14(수)

## 규 칙

- 울산광역시남구규칙 제293호 [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2
- 울산광역시남구규칙 제294호 [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8

## 훈 령

- 울산광역시남구훈령 제132호 [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] ..10

## 【 안 내 문 】

- 남구 전자공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남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
⇒ 구 홈페이지([www.ulsannamgu.go.kr](http://www.ulsannamgu.go.kr)) → 행복남구 → 남구소식 → 남구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울산광역시남구 편집:기획감사실(☎ 226-5402 행정 5402)

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 울산광역시 남구청장

2009년 1월 14일

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293호

###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5명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<별 지>

[별표]

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관련)

직종별	직급별	직 렬 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합	계	합 계	624	425	17	44	138
		정 무 직	1	1			
		일 반 직	514	337	11	40	126
		기 능 직	107	85	6	4	12
		별 정 직	2	2			
정 무 직		구 청 장	1	1			
일 반 직	3급	계	514	337	11	40	126
		부이사관	1	1			
	4급	소 계	5	3	1	1	
		서 기 관	3	2	1		
		기술서기관	2	1		1	
	5급	소 계	38	18	2	4	14
		행 정	22	9	2		11
		의 무	3			3	
		시 설	1	1			
		행정·시설	4	3			1
		행정·보건	2	1			1
		행정·환경	2	1			1
		행정·통신	1	1			
		행정·시설·녹지	1	1			
		행정·시설·전산	1	1			
보건·의료기술 약무 간호	1			1			
6급	소 계	106	78	3	5	20	
	행 정	63	40	3	1	19	
	세 무	2	2				
	사회복지	2	2				
	전 산	1	1				
	농 업	1	1				
	녹 지	1	1				
	보 건	2	2				
	환 경	1	1				
	시 설	11	11				
	통 신	1	1				
	행정·세무	5	5				
행정·시설	6	6					

직종별	직급별	직 렬 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일 반 직	6급	행정·보건	1	1			
		행정·환경	2	2			
		행정·사회복지	2	1			1
		녹지·시설	1	1			
		보건·간호	2			2	
		간호·보건·의료기술	1			1	
		보건·의료기술·약무	1			1	
	7급	소 계	154	106	4	12	32
		행 정	79	45	4	1	29
		세 무	9	9			
		사회복지	11	8			3
		전 산	1	1			
		공 업	2	2			
		농 업	1	1			
		녹 지	2	2			
		보 건	8	4		4	
		약 무	1			1	
		의료기술	1			1	
		간 호	5			5	
		환 경	3	3			
		시 설	17	17			
		통 신	1	1			
		행정·세무	5	5			
		행정·공업	1	1			
		행정·시설	2	2			
		농업·해양수산	1	1			
		농업·수의	1	1			
	전산·통신	1	1				
	보건·별정	2	2				
	8급	소 계	154	100	1	14	39
		행 정	60	29	1		30
		세 무	19	19			
사회복지		12	3			9	
전 산		3	3				
공 업		3	3				
환 경		5	5				
녹 지		2	2				

직종별	직급별	직 렬 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일 반 직	8급	보 건	7	5		2	
		의료기술	6			6	
		간 호	5			5	
		시 설	22	22			
		통 신	4	4			
		행정·환경	1	1			
		행정·시설	1	1			
		행정·해양수산	1	1			
		행정·농지	1	1			
		행정·공업	1	1			
		전산·통신	1				1
	9급	소 계	56	31		4	21
		행 정	26	8			18
		세 무	3	3			
		사회복지	3				3
		보 건	3	1		2	
		시 설	9	9			
		전 산	1	1			
		통 신	1	1			
		의료기술	2			2	
		환 경	2	2			
		농 지	1	1			
행정·세무	5	5					
기 능 직	계		107	85	6	4	12
	6급	소 계	3	3			
		운 전	1	1			
		전 기	1	1			
		사무보조	1	1			
	7급	소 계	7	6		1	
		운 전	2	2			
		사무보조	3	3			
		조 무	1	1			
		보 건	1			1	
	8급	소 계	17	17			
		통 신	1	1			

직종별	직급별	직 렬 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기 능 직		전 기	2	2			
		운 전	4	4			
		사무보조	9	9			
		조 무	1	1			
	9급	소 계	33	29	3	1	
		교 환	1	1			
		전 기	1	1			
		기 계	1	1			
		운 전	12	10	1	1	
		사무보조 통신	1	1			
		사무보조	15	13	2		
		조 무	2	2			
	10급	소 계	47	30	3	2	12
		사무보조 통신	1		1		
		교 환	1	1			
		기 계	2	2			
		운 전	21	19		2	
사무보조		18	4	2		12	
조 무		3	3				
전 기		1	1				
별 정 직	7급상당	계	2	2			
		소 계	2	2			
		비 서 요 원	1	1			
		화생방요원	1	1			

## ◇ 개정이유

-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을 위해 직렬의 폭을 넓혀 일부부서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코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◇ 주요내용

- 본청 5급 직렬 조정
    - 시설 5급 : 2명 → 1명 (△1)
    - 행정·시설 5급 : 3명 → 4명 (증1)
- ※ 건설과 시설5급 1명을 행정·시설5급 1명으로 조정사항임

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 울산광역시 남구청장

2009년 1월 14일

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294호

###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중 “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”를 “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◇ 개정이유

-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서장 직렬의 폭을 넓혀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코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건설과장 : 지방시설사무관 →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
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## 울산광역시 남구청장

2009년 1월 14일

울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132호

###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

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1의 건설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과별	직 종	직 급	정 원	직 령
건설과	계		27	
	일반직	소계	22	
		4급	1	시설1
		5급	1	행정·시설1
		6급	5	행정2, 시설2, 행정·시설1
		7급	7	행정2, 시설3, 환경1, 행정·공업1
		8급	7	행정1, 시설6
		9급	1	행정1
	기능직	소계	5	
		9급	2	사무보조2
		10급	3	기계1, 지도1, 전기1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### ◇ 개정이유

-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렬의 폭을 넓혀 일부부서의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코자 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### ◇ 주요내용

- 부서별 정원조정
  - **건 설 과 : 시설5급  $\Delta$ 1명, 행정·시설 5급 증1명**
    - 시설 5급 : 1명  $\rightarrow$  0명( $\Delta$ 1명)
    - 행정·시설 5급 : 0명  $\rightarrow$  1명(증1명)